

(2024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)

구 분	이 사	감 사
임원정수	12 인	2 인
재적임원	12 인	2 인
참석임원	11 인	2 인

1. 일 시 : 2024년 9월 26일(목) 14:00 ~ 14:50(회의소집 통보일 : 2024년 9월 12일)
2. 장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(삼평동 689) 차바이오컴플렉스 B104 회의실
3. 임원 출·결사항
 - 참석 임원
 - 이사 11인 : 김한중, 김병수, 김승조, 김춘복, 김동익
정길생, 차원태, 김광중, 강일모, 장성구, 지훈상
 - 감사 2인 : 원형태, 박동혁
 - 결석 이사 1인 : 차광렬
4. 안 건
 - 제1호 : 정관 개정
 - 제2호 : 이사 선임
 - 제3호 : 이사장 선임
 - 제4호 : 교원 인사
 - 제5호 : 교육용기본재산(교지) 매입
 - 제6호 : 역삼동 수익용기본재산 수익 증대
 - 제7호 : 대손상각(대학) 및 불용자산 처분(부속병원)
 - 제8호 : 학칙 및 규정 개정
 - 제9호 : 대표서명 임원 선출
5. 회의 내용
 - (1) 성원보고
 - 임종창 사무국장 : 이사 11명, 감사 2명이 참석하였음을 설명 후 성원 보고를 하다.
 - 이사장 :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하다.
 - (2) 개회기도
 - 김병수 이사 : 개회기도를 하다.
 - (3) 전차이사회 회의록 확인

시도

이사	성명	임기	비고
	장성구	2024. 11. 10. ~ 2027. 11. 9.(3년)	교육이사, 중임

- 장성구 이사 : 입실하다.
- 이사장 : 이어서 2024. 11. 9.자로 임기 만료되는 김동익 이사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 주기를 요청하다.
- 김동익 이사 : 퇴실하다.
- 정길생 이사 : 김동익 현 이사를 교육이사로 재 선임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.
- 강일모 이사 : 재청하다.
- 이사장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“김동익 현 이사가 다음과 같이 임기 만료 다음 날부터 3년간 교육이사로 재 선임” 되었음을 선언하다.

이사	성명	임기	비고
	김동익	2024. 11. 10. ~ 2027. 11. 9.(3년)	교육이사, 중임

- 김동익 이사 : 입실하다.
- 이사장 : 다음은 2024. 11. 9.자로 임기 만료되는 본인에 대한 안건이므로 본 건에 대한 진행을 김춘복 이사에게 요청하다.
- 김한중 이사 : 퇴실하다.
- 김춘복 이사 : 김한중 이사의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 주기를 요청하다.
- 김승조 이사 : 김한중 현 이사를 교육이사로 재 선임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.
- 지훈상 이사 : 재청하다.
- 김춘복 이사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“김한중 현 이사가 다음과 같이 임기 만료 다음 날부터 3년간 교육이사로 재 선임” 되었음을 선언하다.

이사	성명	임기	비고
	김한중	2024. 11. 10. ~ 2027. 11. 9.(3년)	교육이사, 중임

- 김한중 이사 : 입실하다.
- 김춘복 이사 : 김한중 이사장에게 회의 진행을 다시 맡기다.

안건 제3호 이사장 선임

- 이사장 : 사무국장에게 안건 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.
- 임종창 사무국장 : 이사장 임기가 만료 예정인 것과 선임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다.
- 이사장 : 후임 이사장을 호선하여 주기를 요청하다.
- 김동익 이사 : 김한중 현 이사장의 연임을 제안 동의하다.

서명	김한중	김춘복	김승조	지훈상
----	-----	-----	-----	-----

- 장성구 이사 : 재청하다.
- 이사장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본인이 다음과 같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하다.

이사장	성명	임기
	김한중	2024. 11. 10. ~ 2026. 11. 9.(2년)

- 이사장 : 법인과 대학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하다.

안전 제4호 교원 인사

- 이사장 : 사무국장에게 안전 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.
- 임종창 사무국장 : 안전을 상정하고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하다.
- 심성한 교무처장 : 교원 인사에 대하여 설명하다.
- 장성구 이사 : 본 안전에 대하여는 대학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교원인사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.
- 김병수 이사 : 재청하다.
- 이사장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교원 인사 : 내용 별첨

안전 제5호 교육용기본재산(교지) 매입

- 이사장 : 사무국장에게 안전 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.
- 임종창 사무국장 : 안전을 상정하고 총무처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하다.
- 이광한 총무처장 : 교지 매입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다.
- 강일모 이사 : 기존 교지에 인접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며, 향후 교육시설 확충에 활용될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.
- 김동익 이사 : 재청하다.
- 이사장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교육용기본재산(교지) 매입 : 내용 별첨

안전 제6호 역삼동 수익용기본재산 수익 증대

- 이사장 : 사무국장에게 안건 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.
- 임종창 사무국장 : 안건을 상정하고 요약 설명하다.
- 김병수 이사 :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.

- 차원태 이사 : 재청하다.
- 이사장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역삼동 수익용기본재산 수익 증대 : 내용 별첨

안전 제7호 대손상각(대학) 및 불용자산 처분(부속병원)

- 이사장 : 사무국장에게 안전 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.
- 임종창 사무국장 : 안전을 상정하고 대학과 부속병원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하다.
- 총무처장, 부속병원재무팀장 : 대손상각 및 불용자산 처분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하다.
- 지훈상 이사 : 주식을 기부한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기부받은 주식을 대손처리 하는 것이며 부속병원의 미사용 구급차를 처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.
- 정길생 이사 : 재청하다.
- 이사장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대손상각(대학) 및 불용자산 처분(부속병원) : 내용 별첨

안전 제8호 학칙 및 규정 개정

- 이사장 : 사무국장에게 안전상정과 설명을 요청하다.
- 임종창 사무국장 : 안전을 상정하고 기획처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하다.
- 강형곤 기획처장 : 학칙 및 규정 개정에 대하여 설명하다.
- 장성구 이사 : 조직 개편, 대학 평가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 동의하다.
- 김동익 이사 : 재청하다.
- 이사장 : 참석 이사들이 다른 의견 없이 전원 찬성함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.

학칙 및 규정 개정 : 내용 별첨

안전 제9호 대표서명 임원 선출

- 이사장 :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김춘복, 장성구 이사와 원형태 감사를 제안하자 참석한 모든 이사가 찬성하다.

(6) 폐회선언

서명	김춘복	장성구	원형태
----	-----	-----	-----

○ 이사장 : 다른 논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

(하극 서명) 이사장 김현

이사장 김 현

김 병

김 승

김 춘

김 동

정 길

이사

차 원

김 광

장 일

장 성

지 훈

원 형

감사

박 동

서명

안건 제1호 정관 개정

1. 개정 이유

-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경우, 그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어 임원 선임을 단기간에 재선임 해야 함
 -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과 같이 하므로 현행 단서 조항 불필요
- ⇒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

2. 신·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15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이사 3년 2. 감사 2년 ②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. 다만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③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선임된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총장 재임기간으로 한다.	제15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이사 3년 2. 감사 2년 ②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. 다만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③<삭제>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선임된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총장 재임기간으로 한다.	임원 선임을 단기간에 재선임 해야 함
제18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)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. ②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의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	제18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)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. ②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삭제>	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과 같이 하므로 현행 단서조항 불필요

안건 제4호

교원 인사

□ 총괄(추인)

구분	종류	인원	직급별	발령일
전임 교원				1.
				1.
비전 교원				1.

사 명	김민준	정지현	이영준
--------	-----	-----	-----

1.

○

N

1
2
3
4
1
2
3
4
5
6
7
8
9
10
11
12
13
14
15

2.

○

N

1
2
3

3.

○

N

1
2
3
4
5
6

서 명	김영남	김영남	김영남
--------	-----	-----	-----

[illegible]

안건 제5호 **교육용기본재산(교지) 매입**

1. 매입 목적 : 포천 과학관 후면에 인접한 토지 매입, 교육시설 확충에 활용

2. 매입 내역

포천시

* 지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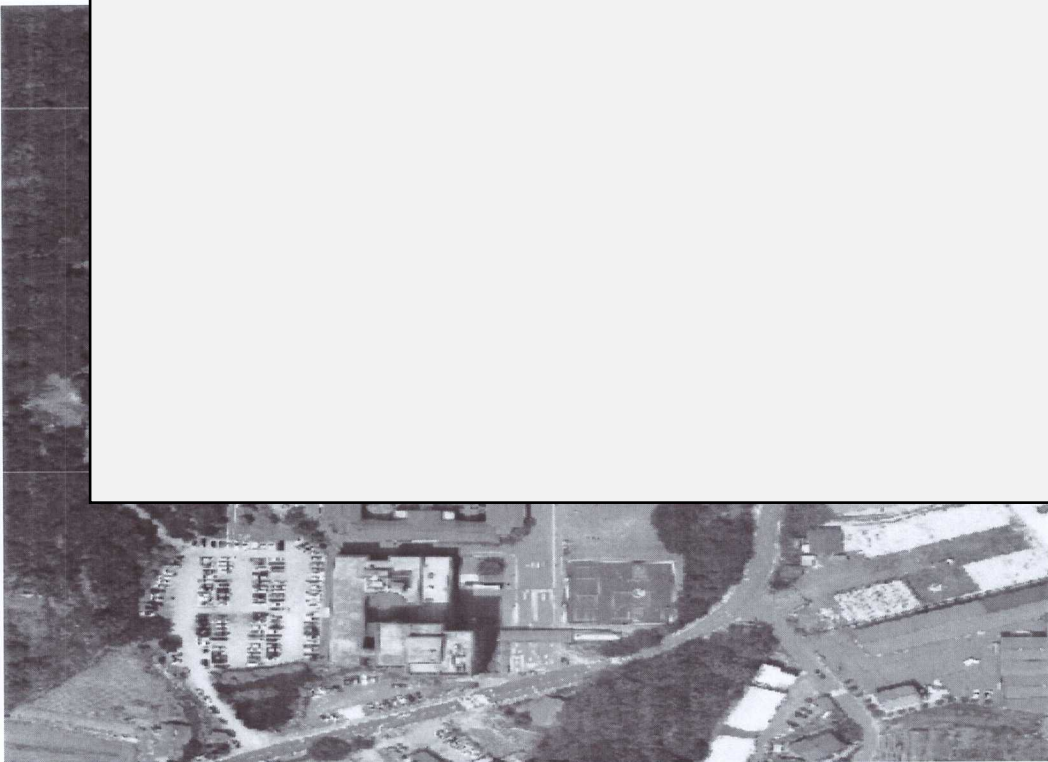
- 계약

- 잔금

3. 취득

4. 재신

5. 위치



서명

안건 제6호 역삼동 수익용기본재산 수익 증대

1. 추진 배경

- (1) 강남 소재 토지의 수익률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, 학교법인의 재정능력(건물 신축 부담 능력 없음)을 보완할 수 있는 수익증대 방안 모색
- (2) 2022~2023년 추진,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 준 「청담동 수익용기본재산 수익 증대」와 같은 방식이므로 위험 요소가 없고 확실한 성과가 예상됨 *청담동 수익용기본재산 경우, 연 임대 순수입이 약 9배(1.1억→10억) 증가 되었음

2. 추진 방식

- (1) 【학교법인 성광학원(차의과학대학교)】 토지를 성광의료재단에 임대
 - 현 임대료를 훨씬 상회하는 토지 임대료를 확보하여 획기적인 수익성 증대
- (2) 【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(차병원)】 건물 멸실 후 병원 건물 신축
 - 성광의료재단(차병원)은 학교법인 성광학원(차의과학대학교)의 설립기관으로서 설립시부터 꾸준히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의료법인임

3. 대상 재산(서울시 강남구 역삼동)

소재지 (역삼동)	토지		건물		용적률	사용승인 연도	현 활용	비고	
	m ²	평	m ²	평					
606-13	604.6	182.9	997.85	301.85	125.9%	1991.9	임대	지하1~지상5층	낮은 토지활용도
606-9	328.1	99.3	869.82	263.12	223.4%	2002.5	〃	지하1~지상5층 집합건물	3~5층은 주택 →임대수익 저조
606-15	271.3	82.1	712.36	215.49	249.9%	2013.7	〃	지하1~지상6층	주차장 협소 →임대수익 저조
계	1,204	364.3	2,580.03	780.46					

* 낮은 토지활용도 및 임대수익 저조

4. 기대 효과 : 현재보다 증가된 임대 수입을 안정적·지속적으로 확보

- 순수입 3배 이상 증가 예상

- 현 건물 임대료 순수입 3.5억(임대수익 연 5.8억 - 관리·운영비 2.3억)
 - * 임대보증금 월세 전환 및 만실 가정
- 토지임대 후 순수입 약 12억 이상 추정
 - * 임대료는 교육부 허가 후 건물멸실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최종 확정됨

5. 세부 추진 방안

(1) 학교법인 성광학원

①【토지 임대】 토지 3개 필지를 성광의료재단에 임대 *건물은 멸실

- 기간 : 기존건물 멸실일 다음날부터 30년
 -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 지상권존속기간 준용
- 임대료
 -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 또는 인근 시세 이상으로 하되, 현 건물 임대료 순수입을 상회하도록 하며 매 2년마다 갱신
 - * 임대보증금의 경우,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12조(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)에 의해 임대료를 산정함
 - 「법인세법시행령」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임대료를 산정함

②【토지사용승낙서 제공】 토지 임차인 성광의료재단이 건물 신축시 필요

(2) 성광의료재단

① 【병원건물 신축】 토지 입차 후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됨

② 【임차권 등의 권리자】 토지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 등의 권리자가 됨

- *임차권 설정 등은 임대차계약 완료 후, 임차인 요구시 교육부 별도 허가
거쳐 진행

6. 추진 일정

- (1) 2024. 7. 기본결재 (2) 2024. 8. 협약서 체결 (3) 2024. 9. 이사회 의결
- (4) 2024. 9.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(탁상평가로 임대료 산정)
- (5) 2024. 9. '토지사용승낙 허가' 신청
- (6) 2024.10. 교육부, '토지사용승낙' 허가
- (7) 2024.11.~ 건물멸실 일정에 맞추어 감정평가 및 토지임대차 변경 계약
- (8) 2024.12.~ 건물멸실 및 건축 추진

※ 위 일정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7. 참고

- (1) 재산보유 현황(2024.4.1.기준 한국사학진흥재단 보고, 입학정원기준) (단위:백만원)

구분	교 지(㎡)			교 사(㎡)			수익용 기본재산		
	기준	보유	확보(%)	기준	보유	확보(%)	기준	보유	확보(%)
현재(24.4.1기준)	68,812	97,507	141.7	34,406	42,582	123.8	28,983	73,545	253.8
건물 멸실 후	차감	변동없음						-328	
	차감후						28,983	73,217	252.6

- 철거 대상 건물가액(328백만원)을 차감하여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252.6% 임

- (2) 위치도(강남차병원 건너편)



서명

안전 제7호**대손상각(대학) 및 불용자산 처분(부속병원)****1. 대손상각**

가. 이유 : 교원 창업회사 폐업으로 기부받은 주식 대손 처리

회사명	대표자 (창업교원)	소속	개업일	폐업일
(주) 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	3. 1.

* 폐업 사유 :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상이하여 사업 확장이 제한적

나. 대손상각 내역

구분	기부받은 주식 수	1주의 금액	대손상각 금액 (장부가액)
교비회계	4,000	500원	2,000,000원

2. 불용자산 처분

가. 이유 :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받은 「재난·감염병 특수구급차」 운행실적 저조

차량	차량번호	받은 년월일	장부가	반납 사유
솔라티 (특수구급차)	71서 1473	2016. 12. 21.	279,600,000	운행실적 저조

나. 처분 절차 : 재 배치 운용 예정 기관인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명의 이전 절차를 거쳐 처분·반납

※ 반납 및 재배치 절차 등은 국립중앙의료원 안내에 따름

서명	[redacted]	[redacted]	[redacted]
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

안전 제8호

학칙 및 규정 개정

2021년 제4차이사회(11.12.)

- 대학의 조직, 학과, 정원, 직제, 인사, 보수 등과 관련된 학칙이나 규정의 제·개정은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정함
- 다만,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제·개정 후 이사회에서 추인하기로 함

□ 총괄 ※ 각 규정 및 조문별 전체 개정사항은 신·구조문 대조표 참조

NO	규정명	주요 개정 이유	공포·시행일
1	차의과학 대학교 학칙	○ 현장실습에 대한 학생들 요구 반영,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필요 ○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려는 경우, 현장학습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해야 함 *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9조1항 ○ 조직 개편 • 경영대학원 폐지 • 보건산업대학원을 ‘보건의료경영대학원’ 으로 변경 • 부속기관 명칭변경, 법무감사실 신설 등 ○ 약학과 전공 교과목 유급 기준 일부 삭제 : “당해 학년 전공과목 한 과목 이상 과락이 있는 자” 삭제	24. 6. 26. 24. 9. 1. (일부 25. 3. 1. 시행)
2	의학전문 대학원 학칙	○ 의학이론과정 및 임상실습과정 기간 변경 • 학생 설문조사 및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임상실습 어려움 등을 반영 *의학이론과정 1.5년 → 2년, 임상실습과정 2.5년 → 2년 ○ 교육과정 운영 예외 규정 신설 •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를 구분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, 학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	24. 6. 26.
3	제대학원 학칙	○ 경영대학원 입학정원 25명, 타대학원 배분 • 스포츠의학대학원 15명 배분(60명→75명) • 임상상담심리대학원 10명 배분(35명→45명) ○ 보건산업대학원을 ‘보건의료경영대학원’ 변경	24. 9. 1. (일부 25. 3. 1. 시행)

서명

4	직제 규정	○부속기관에 현장실습지원센터 신설 ○교학부총장의 업무 중 ‘홍보’ 업무를 행정대외부총장 업무로 변경	24. 6. 26.
		○ 조직 개편 • 비서실을 미래전략실로 개편 • 법무감사실 신설 • 학칙의 부속기관 개정사항을 직제규정에 반영	24. 9. 1.
5	교원 연구년제 에 관한 규정	○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결과, 개선 요구사항 반영 → 연구년 기간을 학기 단위로 변경, 연구년제 활성화 • 1년 이내 → 1년 이내로 하되 학기단위로 함 [평가준거 3.4.]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개선요구사항 ‘교수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’에 근거하여 연구년제를 운영하고 있으나, 인증자격모니터링 시까지 <u>교원 연구년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</u> ○연구년 재신청 자격 구체적 명시 • 연구년 종료 후 3년 이상 교원은 1개 학기 재신청 가능 • 연구년 종료 후 6년 이상 교원은 1 또는 2개 학기 재신청 가능 ○연구년 활동성과 미제출 경우, 재신청 제한 명시 ○연구년 교원의 대학원생 학위논문 지도 기능을 명확히 함	24. 8. 1.